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70호

2018. 6. 21. (목)

함께
서울



목 차

◆ 고 시

제2018-188호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제2018-189호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
제2018-1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20
제2018-191호 홍제천 하천구역지정(변경) 고시	29
제2018-192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31
제2018-1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36
제2018-194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37
제2018-1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40

◆ 공 고

제2018-1435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임차인변경)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2
제2018-144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44
제2018-1444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6
제2018-14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50
제2018-14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51
제2018-1467호 감리업 등록 공고	53
제2018-1468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53
제2018-146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56
제2018-147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57
제2018-1476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58
제2018-1477호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65
제2018-1486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67

◆ 구 고 시

제2018-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종로구)	73
제2018-5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종로구)	74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77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79
제2018-72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마포구)	81
제2018-6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85
제2018-69호 도시계획시설(평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강서구)	87
제2018-119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89
제2018-91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91
제2018-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송파구)	100
제2018-1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101

◆ 구 공 고

제2018-565호 도시관리계획(송인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종로구)	103
제2018-5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용산구)	104
제2018-8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은평구)	105
제2018-9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106

◆ 사업소고시

제2018-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2
------------------------------------	-----

◆ 사업소공고

제2018-14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13
제2018-14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17

◆ 기 타

제2018-16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5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8호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8호(1984.9.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4-53호(2014.5.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개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개포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개설로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 일대

3. 면 적 : 97,360.9㎡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7,360.9	10,206.21	1	1,349.21	2,101.32	140	97,360.9	10,373.21	1	1,349.21	2,101.32	140	증 167㎡
기 반 시 설	소 계	5,496	5,496					6,943	6,943					증 1,447㎡
	도 로	3,525	3,525					4,972	4,972					증 1,447㎡
	광 장	1,971	1,971					1,971	1,971					-
조 경 시 설		107	107					107	107					-
휴 양 시 설		331	331				63	331	331				63	-
운 동 시 설		1,280	1,280				2						2	감 1,280㎡
교 양 시 설		1,242.04	1,242.04	1	1,242.04	1,930.15	1	1,242.04	1,242.04	1	1,242.04	1,930.15	1	-
편 익 시 설		1,750.17	1,750.17		107.17	171.17	6	1,750.17	1,750.17		107.17	171.17	6	-
관 리 시 설							68						68	-
녹지 및 기타		87,154.69						86,987.69						감 167㎡
시설률 (법정 40%이하)		10.48% (산출근거=10,206.21/97,360.9x100)						10.65% (산출근거=10,373.21/97,360.9x100)						증 0.17%
건폐율 (법정 15%이하)		1.38% (산출근거=1,349.21/97,360.9x100)						1.38% (산출근거=1,349.21/97,360.9x100)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공작물 (기)	변경후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7,360.9	10,206.21			1,349.21	2,101.32	140			97,360.9	10,373.21			1,349.21	2,101.32	140	증 167
기 반 시 설	소 계			5,496	5,496								6,943	6,943						증 1,447
	도 로			3,525	3,525								4,972	4,972						증 1,447
	광 장			1,971	1,971								1,971	1,971						
	진입광장	1-1	개포동139	980	980						1-1	개포동139	980	980						
	휴식광장	1-2	개포동139	280	280						1-2	개포동139	280	280						
	휴식광장	1-3	개포동139	147	147						1-3	개포동139	147	147						
	휴식광장	1-4	개포동139	108	108						1-4	개포동139	108	108						
	휴식광장	1-5	개포동139	132	132						1-5	개포동139	132	132						
	진입광장	1-6	개포동139	324	324						1-6	개포동139	324	324						
조 경 시 설	소 계			107	107								107	107						
	쉼터	2-1	개포동 139	40	40						2-1	개포동 139	40	40						
	파고라	3	개포동 139	60	60						3	개포동 139	60	60						
	플랜터	①	휴식광장1-5	7	7						①	휴식광장1-5	7	7						
휴 양 시 설	소 계			331	331					63			331	331					63	
	벤치									(31)									(31)	
	휴게소	가-1	공원 내	61	61						가-1	공원 내	61	61						
	휴게소	가-2	공원 내	128	128						가-2	공원 내	128	128						
	휴게소	가-3	공원 내	58	58						가-3	공원 내	58	58						
	휴게소	가-4	공원 내	12	12						가-4	공원 내	12	12						
	휴게소	가-5	공원 내	12	12						가-5	공원 내	12	12						
	휴게소	가-6	공원 내	12	12						가-6	공원 내	12	12						
	휴게소	가-7	공원 내	12	12						가-7	공원 내	12	12						
	파고라	②	공원 내			목재				(4)	②	공원 내			목재				(4)	
	등의자	③	공원 내			목재				(16)	③	공원 내			목재				(16)	
	평의자	④	공원 내			목재				(12)	④	공원 내			목재				(12)	
	앉음벽	⑤	공원 내	36	36	석재					⑤	공원 내	36	36	석재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공 작 물 (기)	변 경 후								공 작 물 (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오 래 시 설	소 계			1,280	1,280					2								2		
	다이나트랙	7	개포동139	1,280	1,280														폐지	
	체력단련시설	⑥	휴게소 가-1						(2)	⑥	휴게소 가-1							(2)		
교 양 시 설	소 계			1,242.04	1,242.04			1,242.04	1,930.15	1			1,242.04	1,242.04			1,242.04	1,930.15	1	
	시비조각		산책로1							(1)		산책로1							(1)	
	도서관	나	개포동139	1,242.04	1,242.04			1,242.04	1,930.15		나	개포동139	1,242.04	1,242.04			1,242.04	1,930.15		
편 의 시 설	소 계			1,750.17	1,750.17			107.17	171.17	6			1,750.17	1,750.17			107.17	171.17	6	
	전망대	9	개포동139	520	520			64	128			개포동139	520	520			64	128		
	음수대		공원내							(6)		공원내							(6)	
	약수터	다	개포동139	135	135						다	개포동139	135	135						
	주차장	라	도서관	1,052	1,052						라	도서관	1,052	1,052						
	화장실	마	진입광장	43.17	43.17			43.17	43.17		마	진입광장	43.17	43.17			43.17	43.17		
관 리 시 설	소 계									68									68	
	안내판		공원내							(2)		공원내							(2)	
	공원등		공원내							(21)		공원내							(21)	
	휴지통		공원내							(45)		공원내							(45)	
녹지 및 기타	소 계			87,154.69									86,987.69							증 167
	녹지		개포동139	87,154.69								개포동139	86,987.69							증 167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1,911	3,525				
변경					2,342	4,972				
당초	소로	3	1	2	74	148	진입도로	1-1 진입광장	소-3-3	
당초	소로	3	2	2	21	42	연결도로	소-3-3	9 전망대	
당초	소로	3	3	2	300	600	연결도로	소-3-1	소-3-5	
당초	소로	3	4	2	24	48	연결도로	소-3-5	소-3-3	
당초	소로	3	5	2	144	288	진입도로	단지	산책로-12	
당초	소로	3	6	2	192	384	연결도로	소-3-5	소-3-7	
당초	소로	3	7	2	188	336	진입도로	산책로-10	단지	
당초	소로	3	8	2	121	242	연결도로	9 전망대	소-3-3	
당초	소로	3	9	2	38	76	연결도로	산책로 13	소-3-3	
당초	소로	3	10	2	50	100	연결도로	소-3-7	소-3-7	
당초	산책로		1	1.5	300	450	산 책	소-3-1	소-3-8	
당초	산책로		2	1.5	95	143	산 책	근린광장	산책로-5	
당초	산책로		3	1.2	32	48	산 책	근린광장	산책로-2	
당초	산책로		4	0.9	33	31	산 책	근린광장	1-4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5	1.5	10	21	산 책	산책로-1	산책로-2	
당초	산책로		6	3	33	100	산 책	가-2 휴게소	1-5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7	2	98	193	산 책	단지	1-5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8	1.2	68	92	산 책	산책로-7	가-2 휴게소	
당초	산책로		9	1.2	3	7	산 책	단지	산책로-8	
당초	산책로		10	2	15	29	산 책	단지	소-3-7	
당초	산책로		11	1.5	62	93	산 책	가-2 휴게소	산책로-10	
당초	산책로		12	5	10	54	산 책	1-5 휴식광장	소-3-5	
신설	산책로		13	2	156	555	산 책	소-3-7	소-3-7	
신설	산책로		14	2	195	725	산 책	소-3-6	소-3-7	
신설	산책로		15	2	60	121	연결도로	소-3-7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신설	산책로		16	2	20	46	연결도로	산책로-15	양재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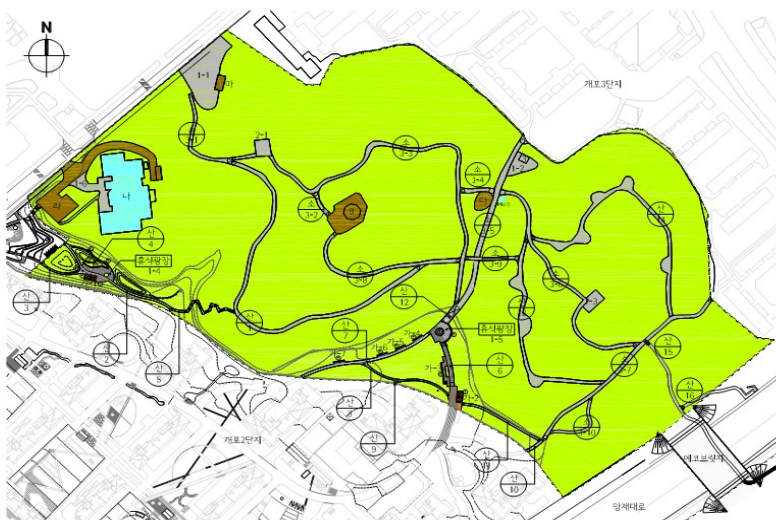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전)

개포 근린공원

[illegible]

조성계획도 (변경후)

개포 근린공원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9호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7호(2016.11.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개설로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3. 면 적 : 5,029,25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6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029,258.0	133,456.0	2동	160.0	160.0	11	5,029,258.0	133,690.0	2동	160.0	160.0	11	증 234㎡
기 반 시 설	소 계	41,251.0	41,251.0					41,485.0	41,485.0					증 234㎡
	도 로	40,791.0	40,791.0					41,025.0	41,025.0					증 234㎡
	녹지연결로	460.0	460.0					460.0	460.0					
조 경 시 설							4						4	
휴 양 시 설		673.0	673.0				4	673.0	673.0				4	
교 양 시 설		3,812.0	3,812.0				1	3,812.0	3,812.0				1	
운 동 시 설		8,437.0	8,437.0					8,437.0	8,437.0					
편 익 시 설		79,091.0	79,091.0	1동	52.0	52.0		79,091.0	79,091.0	1동	52.0	52.0		
관 리 시 설		192.0	192.0	1동	108.0	108.0	2	192.0	192.0	1동	108.0	108.0	2	
녹지 및 기타		4,895,802.0						4,895,568						감 234㎡
시 설 률 (법정 20%)		(133,456 / 5,029,258) × 100 = 2.65%						(133,690/ 5,029,258) × 100 = 2.66%						증 0.01%
건 폐 율 (법정 4%)		(160.0 / 5,029,258.0) × 100 = 0.003%						(160.0 / 5,029,258.0) × 100 = 0.003%						

< 시설지구별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029,258	133,456	2동	160	160	11	5,029,258	133,690	2동	160	160	11	증 234㎡
공원 시설 구역	소계	317,930	20,943	2동	160	160	9	317,930	20,943	2동	160	160	9	
	구룡천의 지구	77,752	3,866				2	77,752	3,866				2	
	옥수천지구	146,278	11,655	1동	108	108	5	146,278	11,655	1동	108	108	5	
	대모천지구	93,900	5,422	1동	52	52	2	93,900	5,422	1동	52	52	2	
시설외지구		4,711,328	112,513				2	4,711,328	112,747				2	증 234㎡
시설구역율 (법정 20%이하)		(317,930 / 5,029,258) × 100 = 6.3%						(317,930 / 5,029,258) × 100 = 6.3%						

< 시설외지구 >

1. 총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711,328	112,513				2	4,711,328	112,747				2	증234㎡
기 단 기 사 설	소 계	35,068	35,068					35,302	35,302					증234㎡
	도 로	34,608	34,608					34,842	34,842					증234㎡
	녹지연결로	460	460					460	460					
조 경 시 설							1						1	
휴 양 시 설		445	445				1	445	445				1	
편 익 시 설		77,000	77,000					77,000	77,000					
녹지 및 기타		4,598,815						4,598,581						감234㎡
시 설 률 (법정 20%)		(112,513 / 4,711,328) × 100 = 2.39%						(112,747/ 4,711,328) × 100 = 2.39%						
건 폐 율 (법정 4%)		-						-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면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합 계			4,711,328	112,513				2			4,711,328	112,747				2	증234㎡					
	소 계			35,068	35,068							35,302	35,302					증234㎡					
	도로			34,608	34,608							34,842	34,842					증234㎡					
	녹지																						
	연결로				460	460						460	460										
조	소 계								1								1						
	그늘시설								1								1						
	소 계			445	445				1			445	445				1						
	휴게소	가	2개소	445	445					가	2개소	445	445				1						
	·	가-1	개포 산53-22	(290)	(290)					가-1	개포 산53-22	(290)	(290)										
휴	·	가-2	개포 산53-22	(155)	(155)					가-2	개포 산53-22	(155)	(155)										
	장의자								1								1						
	소 계			77,000	77,000							77,000	77,000										
	약수터	나	5개소	77,000	77,000					나	5개소	77,000	77,000										
	·	나-1	개포 산53-22	(15,000)	(15,000)					나-1	개포 산53-22	(15,000)	(15,000)										
편	·	나-2	개포 산53-1	(15,000)	(15,000)					나-2	개포 산53-1	(15,000)	(15,000)										
	·	나-3	개포 산12-7	(17,000)	(17,000)					나-3	개포 산12-7	(17,000)	(17,000)										
	·	나-4	개포 산63-35외 1필지	(15,000)	(15,000)					나-4	개포 산63-35외 1필지	(15,000)	(15,000)										
	·	나-5	개포 산53-1	(15,000)	(15,000)					나-5	개포 산53-1	(15,000)	(15,000)										
	·			4,598,815								4,598,581									감234㎡		
녹지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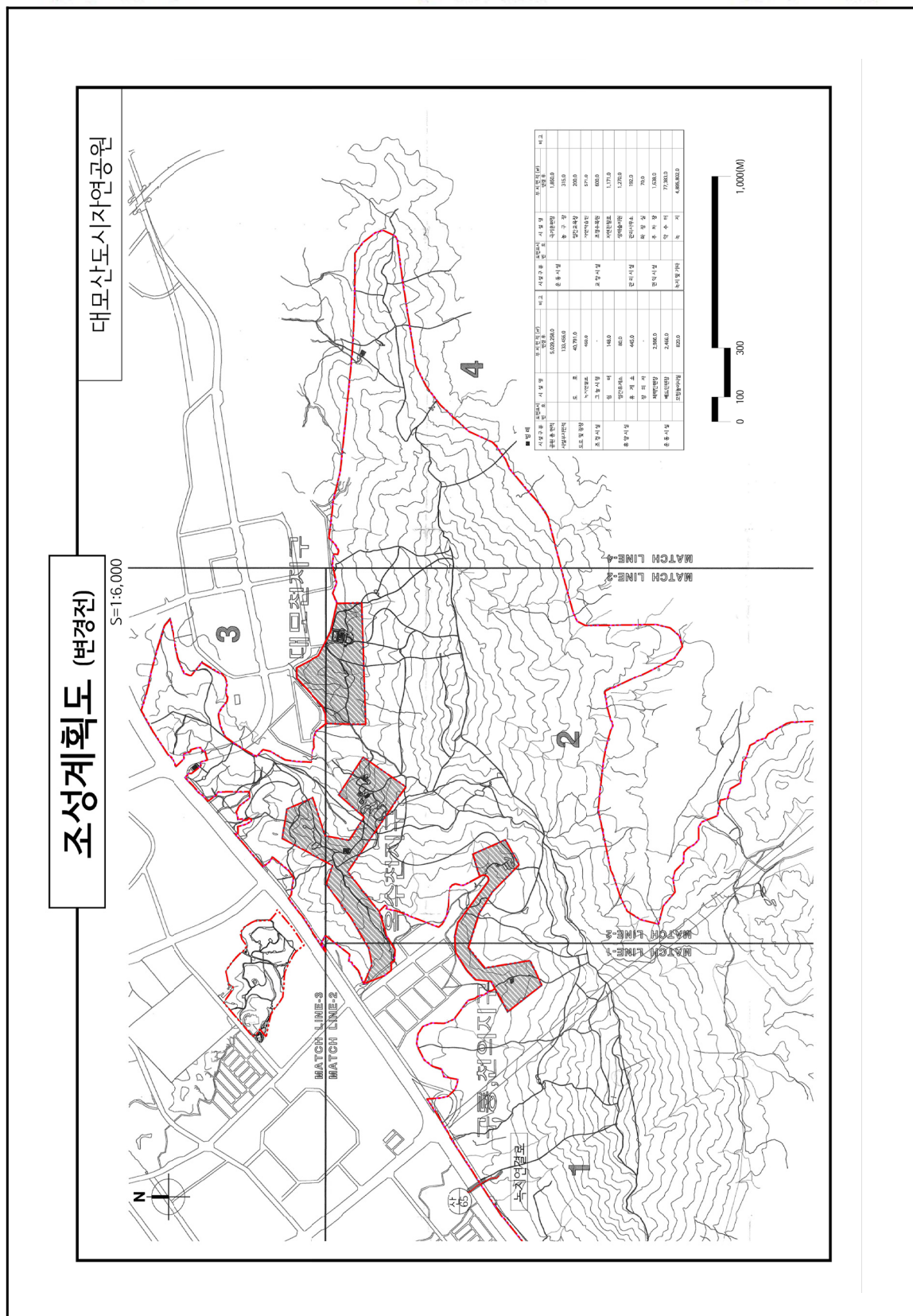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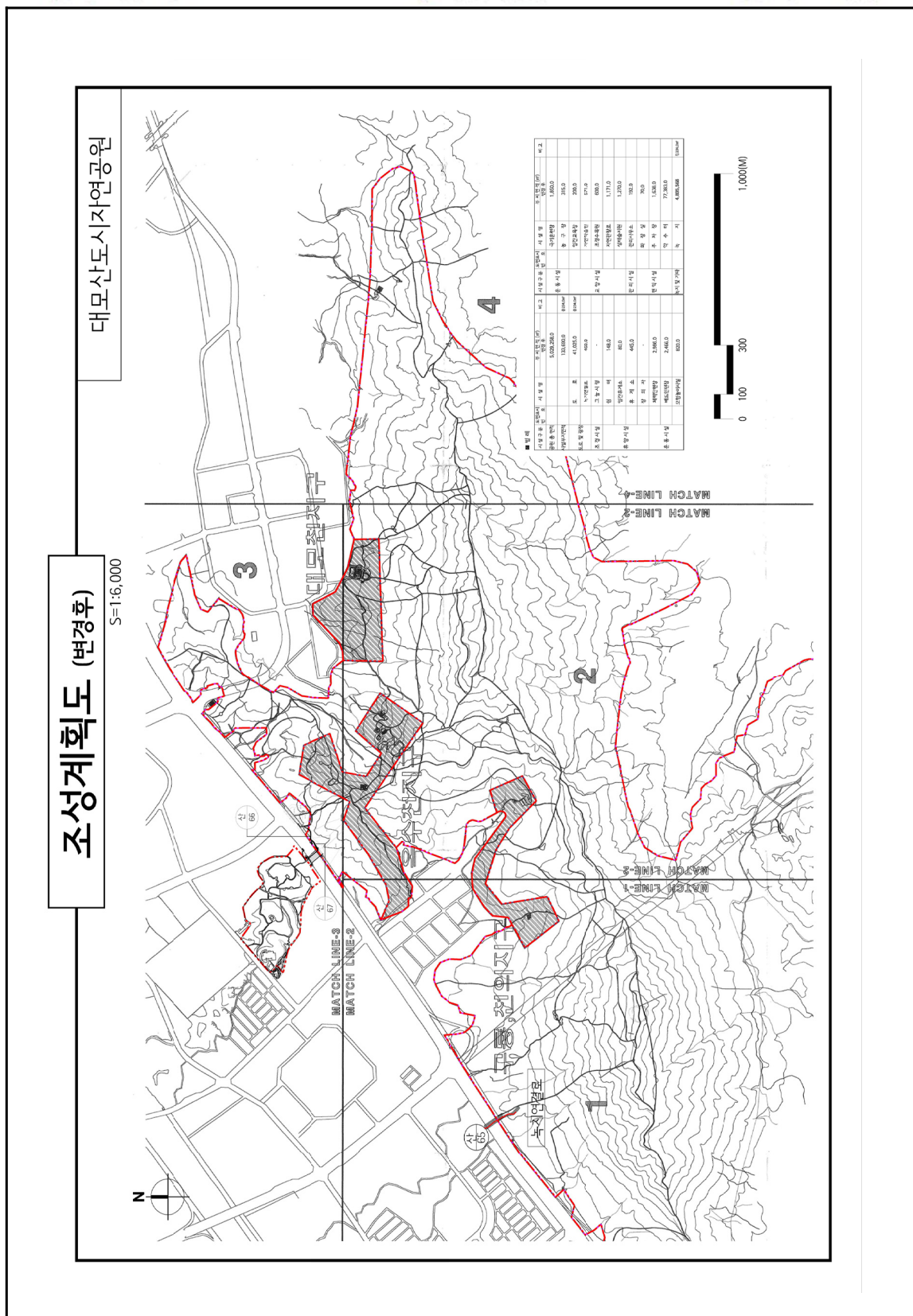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번경	소로	합 계			22,657	34,608				증 234㎡
					22,768	34,842				
당초		소 계			411	1,192				
번경					411	1,192				
당초			3	1	3	918	순환로	일원 산52-9	일원 422	
당초			3	2	3	159	순환로	일원 산52-1	일원 산52-1	
당초			3	3	3~9	115	진입로	개포 산176-7	개포 산176-6	
당초		소 계			22,246	33,416				증 234㎡
번경					22,357	33,650				
당초	산책로		1	1.5	410	615	산책로	개포 산51-5	개포 산21-1	
당초			2	1.5	4,210	6,315	산책로	개포 산21-1	일원 산46-43	
당초			3	1.5	24	36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4	1.5	40	60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5	1.5	310	465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6	1.5	632	948	산책로	개포 산180-11	개포 산25-1	
당초			7	1.5	810	1,215	산책로	개포 산176-6	개포 산53-22	
당초			8	1.5	234	351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9	1.5	260	390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10	1.5	808	1,212	산책로	개포 산157-2	개포 산53-22	
당초			11	1.5	302	453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5	
당초			12	1.5	124	186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13	1.5	44	66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당초			14	1.5	258	387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신책로	루	15	1.5	538	807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당초			16	1.5	424	636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2	
당초			17	1.5	474	711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1	
당초			18	1.5	110	165	산책로	개포 산53-28	개포 산53-22	
당초			19	1.5	128	192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0	1.5	32	48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1	1.5	16	2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2	1.5	1,008	1,512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3	1.5	670	1,005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4	1.5	116	17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2-1	
당초			25	1.5	556	83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1	
당초			26	1.5	138	207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7	1.5	92	138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8	1.5	186	279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9	1.5	26	39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30	1.5	106	159	산책로	개포 산52-1	일원 442	
당초			31	1.5	120	180	산책로	일원 433	일원 52-9	
당초			32	1.5	268	402	산책로	일원 산52-9	일원 산63-36	
당초			33	1.5	448	672	산책로	일원 산52-10	일원 산63-35	
당초			34	1.5	480	720	산책로	개포 144-1	개포 산148-3	
당초			35	1.5	210	315	산책로	개포 산69-2	개포 산67-1	
당초			36	1.5	162	243	산책로	개포 산67-1	개포 산55-1	
당초	신책로	루	37	15	628	942	산책로	일원 산26-3	개포 산49	
당초			38	1.5	172	258	산책로	일원 산46-4	일원 산46-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9	1.5	298	447	산책로	일원 산36-1	일원 산41	
당초			40	1.5	42	63	산책로	개포 산46-16	개포 산46-16	
당초			41	1.5	234	351	산책로	개포 산46-16	개포 산46-12	
당초			42	1.5	190	285	산책로	개포 97	개포 산49	
당초			43	1.5	128	192	산책로	개포 산48-1	개포 산50	
당초			44	1.5	450	675	산책로	개포 산48-1	개포 산50	
당초			45	1.5	108	162	산책로	개포 산50	개포 152-2	
당초			46	1.5	48	72	산책로	일원 463	일원 463-32	
당초			47	1.5	420	630	산책로	일원 441	일원 산63-35	
당초			48	1.5	42	63	산책로	일원 산63-35	일원 산63-39	
당초			49	1.5	268	402	산책로	일원 산63-39	일원 산63-39	
당초			50	1.5	522	783	산책로	일원 산63-39	일원 산63-39	
당초			51	1.5	438	657	산책로	일원 산63-31	세곡 산46-1	
당초			52	1.5	304	456	산책로	일원 산63-31	일원 산4-7	
당초			53	1.5	16	24	산책로	일원 산63-1	일원 산63-1	
당초			54	1.5	552	828	산책로	일원 산63-1	세곡 산46-43	
당초			55	1.5	300	450	산책로	세곡 산46-43	세곡 산46-43	
당초			56	1.5	980	1,470	산책로	세곡 산46-43	세곡 산35	
당초			57	1.5	272	408	산책로	일원 547-2	세곡 산46-43	
당초			58	1.5	206	309	산책로	일원 산3-20	개포 산39-1	
당초			59	1.5	38	57	산책로	일원 산3-20	일원 산3-20	
당초			60	1.5	58	87	산책로	세곡 산39-1	세곡 산39-1	
당초			61	15	126	189	산책로	일원 산3-20	세곡 산37	
당초			62	1.5	66	99	산책로	세곡 산34-1	세곡 산34-1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신책로		63	1.5	196	294	진입로	개포 108	개포 산56-4	
당초			64	1.5	276	414	진입로	개포 산62-2	개포 113	
당초			65	2.0	94	188	산책로	개포 1277-1	개포 산207	
신설			66	2.0	50	100	산책로	개포 산69-3	개포 산72-3입	중 100㎡
신설			67	2.0	67	134	산책로	개포 산72-3입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중 13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9호(2018.02.2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618호(2018.5.31.)로 열람공고 실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에 대해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2133-8288) 및 강북구청 공원녹지과(901-6923)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나. 사업시행지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

다. 사업의 내용 : 토지 및 물건 보상

라. 규 모 : 11,561㎡

마.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9필지		12,109	11,561							
1	우이동 316 전		3,692	3,6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텔리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2	우이동 334	대	98	98			기획재정부					
3	우이동 334-1	대	177	177			기획재정부					
4	우이동 317 전		1,122	1,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텔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빌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빌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빌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영자	216/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내용	
5	우이동 335 대	228	228	228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신내두산 아파트 526동 101호	임수진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44 증산마을 605동 905호	임명진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중로구 중로63가길 7-4	임미진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강동구 풍성로42길 31 성내빌라 201호	임효진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39 오션타워빌 605호	임유진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성북구 종암로 90 노블레스타워 1214호	조형림	1/6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6	우이동 신96 임야	4,898	4,898	4,8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욱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 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텔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빌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빌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 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6	우이동 산96	임야	4,898	4,898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영자	216/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7	우이동 산98-2	임야	38	3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텔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영자	216/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8	우이동 산98-4	임야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선명	504/1920				
9	우이동 산99-1	임야	1,853	1,853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영자	216/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9	우이동 산99-1	임야	1,853	1,8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크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타 301호	이영자	216/1920				

물건조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우이동 산96	주택(1층)	목조 / 외집	79.34	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2		주택	목조 / 기와	26.45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관리의 내 용	
2	우이동 산96	주택	목조 / 기와	26.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 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0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5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테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1호

홍제천 하천구역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홍제천 하천구역 결정(변경)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구역 지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당초	변경	
홍제천	지방 하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No.7+1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No.7+389)	206	528	9	- 결정일 : 2018.6.21. - 사 유 : 하천법제10조제1항

2.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을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와 서대문구(안전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백분의 1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 게재생략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m ²)	기존 하천구역 면적(m ²)	변경(m ²)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m ²)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소계					15필지		2,815	528	9	519	9		
1	서울	서대문	홍제	287-147	대	131	39	-	39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이**	
2	서울	서대문	홍제	287-212	대	206	23	-	23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이**	
3	서울	서대문	홍제	287-263	대	20	20	-	20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송**	
4	서울	서대문	홍제	287-59	대	159	38	-	38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이**	
5	서울	서대문	홍제	287-62	대	73	8	-	8	-	-	국 (국토교통부)	
6	서울	서대문	홍제	287-63	대	155	36	-	36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송**	
7	서울	서대문	홍제	287-65	대	175	35	-	35	-	-	국 (기획재정부)	
8	서울	서대문	홍제	287-72	대	185	76	-	76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황**	
9	서울	서대문	홍제	287-73	대	162	33	-	33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윤**	
10	서울	서대문	홍제	287-74	대	172	37	-	37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박**	
11	서울	서대문	홍제	287-75	대	188	35	-	35	-	서울 은평구 녹번동 ***	남**	
12	서울	서대문	홍제	287-94	대	169	25	-	25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전**	
13	서울	서대문	홍제	287-97	대	428	47	-	47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학교법인 의담학회	
14	서울	서대문	홍제	287-99	대	357	32	-	32	-	서울 은평구 역촌동 ***	재단법인 선강장학회	
15	서울	서대문	홍제	287-57	대	235	44	9	35	9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2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5호(2017.4.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1호(2018.3.22.)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마포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8호(2015.12.3)로 결정(변경)된 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비고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 사모투자(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주식회사 효성	기정) 이상운 / 변경) 김규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포구 서교동	395	43	대	2,565.6	기정	멀티에셋 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00%	없음	-	-
2		395	49	대	1,620.2							
3		395	54	도	126.6							
4		395	62	대	285.3	변경	아시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00%	없음	-	-
5		395	63	도	65.1							
6		395	176	대	2,073.1							
계					6,735.9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비고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 사모투자(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주식회사 효성	기정) 이상운 / 변경) 김규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기간 : (기정)지구지정일 ~ 2019.11 → (변경)지구지정일 ~ 2020.03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수용인구 : (기정) 1,181인 → (변경) 1,707인

○ 주택건설계획 : (기정) 973호(공공175호, 민간798호) → (변경) 913호(공공162호, 민간751호)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기정	공공 임대주택	17.92 TYPE	88	9.0	88	7.6	
		37.64 A TYPE	87	8.9	97	8.2	
		소 계	175	17.9	175	14.8	
	기업형 임대주택	17.92 TYPE	382	39.3	382	32.4	
		37.64 A TYPE	208	21.4	208	17.6	
		37.64 B TYPE	208	21.4	416	35.2	
		소 계	798	82.1	1,006	85.2	
	합 계		973	100.0	1,181	100.0	
변경	공공 임대주택	17.93 TYPE	62	6.8	62	3.6	
		37.17 A TYPE	63	6.9	167	9.8	
		37.17 B TYPE	37	4.1	74	4.3	
		소 계	162	17.8	303	17.8	
	기업형 임대주택	17.93 TYPE	288	31.5	288	16.9	
		37.17 A TYPE	292	32.0	774	45.3	
		37.17 B TYPE	171	18.7	342	20.0	
		소 계	751	82.2	1,404	82.2	
	합 계		913	100.0	1,707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 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불입(도면게재 생략)

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불입]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확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바)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기부채납 내용	기 정			변 경		
		면 적	기부채납 면 적	비고	면 적	기부채납 면 적	비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10,662.317㎡	1,019.05㎡	15.13%	건축연면적 10,736.64㎡	1,019.04㎡	15.13%
기반시설(도로)	도로 설치 및 제공	부지면적 239.46㎡	239.46㎡	3.55%	부지면적 239.46㎡	239.46㎡	3.55%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4,502.10㎡	1,075.79㎡	15.79%	건축연면적 4,412.68㎡	1,054.22㎡	15.65%

※ 전체 구역면적(6,735.9㎡)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 기반시설(도로)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포구 서교동	395	43	대	2,565.6	기정	멀티에셋 자산운용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00%	없음	-	-
2		395	49	대	1,620.2							
3		395	54	도	126.6							
4		395	62	대	285.3	변경	아시아 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00%	없음	-	-
5		395	63	도	65.1							
6		395	176	대	2,073.1							
계				6,735.9	-							

- 2) 지장물조서 : 별도 지장물 없음
 3)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가.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위치	시설규모	비고
도로	기점 : 광(주)2-58(양화로) 종점 : 서교동 395-49	239.46㎡	- 1개 노선 신설(일반도로) ※ 도로 순부담 면적 제외.
공공시설 (공연장, 공공업무시설)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기정: 4,502.10㎡ 변경: 4,412.68㎡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6호(2017.4.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외 1
(대표자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외 1인)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서교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가. 당초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19년
 - 나.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3월 31일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나. 대지면적 : 6,496.44㎡
 - 다. 건 폐 율 : 당초) 58.50% (건축면적: 3,800.33㎡)
 변경) 58.37% (건축면적: 3,792.29㎡)
 - 라. 용 적 률 : 당초) 650.99%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42,291.04㎡)
 변경) 655.3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42,576.32㎡)
 - 마. 용 도 : 당초) 공동주택[공공임대(행복주택) 175세대/기업형임대(뉴스테이) 798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공동주택[공공임대(행복주택) 162세대/기업형임대(뉴스테이) 751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규 모 : 당초) 1개동, 지하 5층/지상 24층, 연면적 67,953.14㎡
 변경) 1개동, 지하 5층/지상 24층, 연면적 68,446.92㎡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4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4호(2017.8.17.)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4)와 용산구청 건축 디자인과(02-2199-7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1) 도로(변경없음)
 - 2) 공공청사(변경)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공공 청사	공공 업무 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일대	6,066.3㎡ (건축연면적)	감 23.9㎡	6,042.4㎡ (건축연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지하1층,지상2층)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 (경미한 변경)결정되며 공공기여량 산정 방법 등은 서울시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연면적 감소 : 감) 23.9㎡	- 건축설계 변경에 따라 변경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확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바)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기부채납 내용	기 정			변 경		
		면 적	기부채납 면적	비고 ^{주)}	면 적	기부채납 면적	비고 ^{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22,907.3㎡	1,569.0㎡	18.1%	건축연면적 22,861.14㎡	1,569.0㎡	18.1%
기반시설(도로)	도로 설치 및 제공	부지면적 1,632.8㎡	1,632.8㎡	18.8%	부지면적 1,632.8㎡	1,632.8㎡	18.8%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6,066.3㎡	1,238.0㎡	14.2%	건축연면적 6,042.4㎡	1,233.0㎡	14.2%
계			4,439.8㎡	51.1%		4,434.8㎡	51.1%

※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되며,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주) 전체 구역면적(8,670.0㎡)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변경)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1,632.8㎡	-	1,632.8㎡	- 3개 노선(대로, 중로)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건축면적 6,066.3㎡	감) 23.9㎡	건축면적 6,042.4㎡	- 위치 : 지하1층, 지상2층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면적 감소 : 감) 23.9㎡	- 건축설계 변경에 따라 변경

2) 계획기준 및 근거(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용산구 한강로2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용산구 한강로2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대표자 : 이지상)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1-1, 418호 (동자동, 삼흥빌딩)

나. 명 칭 : 주식회사 호반건설(대표자 : 전중규)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1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나. 대지면적 : 7,037.2㎡

다. 건 폐 율 : 57.52% (건축면적: 4,047.54㎡)

라. 용적률

- 지정 : 962.33%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67,720.88㎡)

- 변경 : 961.99%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67,697.27㎡)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323세대/민간임대 763세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바. 규 모

- 지정 : 2개동, 지하7층/지상35.37층, 연면적 99,972.07㎡

- 변경 : 2개동, 지하7층/지상35.37층, 연면적 99,873.27㎡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지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35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임차인변경)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 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임차인변경)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06.12. ~ 2018.06.26.(15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 02-2290-6200)으로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 시 공 달 대 상 자 명 단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차량번호	주차장	입차일자	출차일자	출차일시	부과금액	가산금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4건								총합계 : 75,400원					
1	20204975	1899687427545	25나8730	서린노외	2018-01-02	2018-01-02	09:18	42,000	0	42,000	올리브네과의원 (문율선)	서울 마포구 동교로	03980	폐문부재
2	20205107	1899687427546	25나8730	서린노외	2018-01-09	2018-01-09	09:00	8,600	0	8,600	올리브네과의원 (문율선)	서울 마포구 동교로	03980	폐문부재
3	20205140	1899687427547	12호3061	신설동 풍물시장	2018-01-14	2018-01-14	09:00	18,000	0	18,000	황문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32422	폐문부재
4	20205179	1899687427548	39호6009	구파발역	2018-01-22	2018-01-22	11:00	6,800	0	6,800	문창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일로	10271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4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서울83바3349	(주)양**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03-23 23:46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4. 공고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7. 5. (목)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
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오필경(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44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30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3구1768	박*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02-04 14:19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90부8305	유*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02-05 16:01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3	70로2237	김*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02-14 10:43	송파대로 2차로	"	"
4	89가8694	최*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8-02-19 14:35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5	서울85구4864	쥬에**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02-20 10:42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6	73서1871	ZH***UA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2-26 19:41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7	서울85마9789	원*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03-07 14:4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8	92노2864	이*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8-03-07 17:14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9	90다4045	한*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2-13 07:29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	70고4119	최*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03-09 16:33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11	80도5295	정*종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3-11 14:0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	"
12	80소3977	남*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03-08 15:41	경인고속도로 4차로	"	"
13	92가4054	박*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03-13 12:42	경인고속도로 2차로	"	"
14	서울85바3589	합동***배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03-13 16:54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15	80저4107	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03-14 00:05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16	88라9612	지*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03-15 10:37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17	85마7419	박*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03-2012:5 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18	90가2280	정*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8-03-21 13:10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19	80모4720	조*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03-21 16:5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0	80거5034	채*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03-22 08:5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1	서울83나4785	오*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3-25 07:26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2	91저4065	윤*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8-03-28 18:02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23	80두1033	신*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03-29 08:05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24	90소4943	박*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03-29 11:53	강변북로 서울방향 3차로	"	"
25	81어8931	이*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8-03-14 07:43	송파대로 1차로	"	"
26	80서2305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03-29 15:53	통일로 1차로	"	"
27	80보1251	이*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03-30 14:20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28	76가2702	김*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3-31 06:57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29	80누5864	㈜대**** 건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8-03-3115:3 6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30	72서5799	문*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03-31 23:28	통일로 1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7.5(목)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오필경(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71	(재)아름다운재단 (대표 : 박종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우토로의 역사적 보전,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 18.6.8. ~ ' 19.3.31.
						' 18.6.8. ~ ' 20.6.8.
2018-72	(재)아름다운재단 (대표 : 박종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복지수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련연구를 통한 제도 지원 사업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 18.6.8 ~ ' 19.3.31
						' 18.6.8. ~ ' 20.6.8.
2018-73	장발장 은행 (대표 : 오창익)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4길 22, 지하 1층 (효창동, 다모빌딩)	-벌금형 미납으로 환형유치 예정 혹은 환형 처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950 (현금)	전국	' 18.6.8. ~ ' 19.6.8.
						' 18.6.8. ~ ' 20.6.8.
2018-74	(사북)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 정연보)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공덕동, 서울시복지타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화사업, 폭염 및 한파대비 지원사업 등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100 (현금)	전국	' 18.6.8. ~ ' 19.1.31.
						' 18.6.8. ~ ' 20.1.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별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8. 7. 1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납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284-5421, 5424 팩스번호: 02-841-6458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진*산	경기.부천.소사.성주로214번길 2*7 (심곡본동)	일시: 2017-12-11 15:41 장소: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길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9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8-07.10
차*석	경기.구리.건원대로34번길 77 610동 1*04호 (인창동, 주공아파트)	일시: 2018-01-22 10:00 장소: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고가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4.0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7.10
이*일	인천.남동구 장승남로 34 *03동 *01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일시: 2018-02-02 11:27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4.4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7.10
조*백	경기.성남.분당구 동판교로 91 *01동 10*4호(백현동, 백현마을)	일시: 2018-02-02 14:38 장소: 서초.서초.서울교대(서초중앙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2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7.10
박*호	경남.통영시 동문4길 *9-4 (정량동)	일시: 2018-02-05 14:08 장소: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0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7.10
배*환	인천.서구 경서로 20 403호 (경서동, 천지샙빌라)	일시: 2018-02-19 14:29 장소: 영등포.여의도.여의상류IC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7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1,000원 납기일: 2018-07.10
유*정	충남.천안.동남구 충절로 *35-1*02동 401호(목천읍, 명품하우스)	일시: 2018-02-20 06:14 장소: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내용: 폭 초과, 초과값 :0.25m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312,600원 납기일: 2018-07.10
박*준	경기.부천.심곡로9번길 40 4층 (심곡본동)	일시: 2018-02-21 16:18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4.5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21,000원 납기일: 2018-07.10
김*필	대구.북구 매천로동 *7길 51 (매천동)	일시: 2018-03-02 06:53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309,000 납기일: 2018-07.10
이*재	인천.동구 인종로7*2번길 4-3 (송림동)	일시: 2018-03-07 15:03 장소: 영등포.여의도동 여의상류IC 내용: 축 하중 초과값 :1.8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15,000원 납기일: 2018-07.10
정*수	서울.양천. 남부순환로*5길 10 *03호 (신월동, 중원맨션)	일시: 2018-03-08 09:32 장소: 구로구 구로동 도림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4.1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15,000원 납기일: 2018-07.10
최*석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상작1길 20	일시: 2018-03-09 13:53 장소: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로 내용: 폭 초과, 초과값 :0.28m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309,000원 납기일: 2018-07.10
박*민	인천.서구 고산후로*61번길 41 *03호 (원당동)	일시: 2018-03-10 11:35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4.3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15,000원 납기일: 2018-07.1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원	경기.김포.김포한강4로420번길 163 *07동 *06호 (구래동, 김포한강엘에이치 호수마을5단지)	일시: 2018-03-14 07:2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 :10.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824,000원 납기일: 2018-07.10
김*배	충남.천안.서북구 서부11길 24 *03호 (성정동, 다가구주택)	일시: 2018-04-03 07:35 장소: 영등포.여의도동 여의하류IC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3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15,000원 납기일: 2018-07.10
서*석	인천. 중구 제물량로 2*2-13 (북성동 2가)	일시: 2018-04-06 06:15 장소: 영등포.여의도동 여의상류IC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 :1.85t	처분일: 2018-06.08 과태료: 515,000원 납기일: 2018-07.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67호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종합감리업 (서울S-1-473)	(주)한빛파워 (110111-1717044)	이우방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601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	2018.06.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68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2차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06.18. ~ 2018.07.02.(15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 02-2290-6200)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일시	출차일자	출차일시	누과금액	가산금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1	20205635	05주0301	쥘 컴팩스	동대문2	2018-03-28	03:05	2018-03-28	03:44	3,200	0	3,200	박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10559	폐문부재
2	20205479	12서4203	제네시스 (GENESIS)	신설동 풍물시장	2018-03-06	14:41	2018-03-06	19:00	7,800	0	7,800	주식회사 두손에이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3908	이사불명
3	20205573	13누9358	제네시스 (GENESIS)	서린노외	2018-03-19	14:49	2018-03-19	18:00	15,600	0	15,600	박찬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05232	폐문부재
4	20205464	14녀9567	ALTIMA 3.5	창동역	2018-03-02	20:32	2018-03-02	21:58	1,800	0	1,800	정홍원	경기도 평택시 상서제로	17845	폐문부재
5	20205550	20거8766	S350 BlueTEC	한강진역	2018-03-14	18:39	2018-03-14	19:42	600	0	600	전성호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로	22309	폐문부재
6	20205483	31고8918	INFINITI G37S	북정역	2018-03-06	08:03	2018-03-06	12:10	2,500	0	2,500	정대규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	12978	폐문부재
7	20205775	32노0262	아반떼 (AVANTE)	훈원원공원	2018-03-31	14:03	2018-03-31	18:18	20,400	0	20,400	한정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55125	폐문부재
8	20205605	59조2263	모닝	한강진역	2018-03-22	18:57	2018-03-22	19:45	1,200	0	1,200	박명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07048	폐문부재
9	20205643	69기8902	싼타페 (SANTAFE)	신대방역	2018-03-28	19:59	2018-03-28	22:13	4,000	0	4,000	박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06218	수취인불명
10	20205595	90녀2891	코란도 스포츠	신설동 풍물시장	2018-03-21	17:32	2018-03-21	19:00	2,700	0	2,700	김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23016	폐문부재
11	20205501	92고9175	포터II (PORTER II)	천호역	2018-03-09	17:06	2018-03-09	18:41	2,800	0	2,800	성순남	경기도 구리시 인골로	11933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6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886	2018.5.2.	주식회사 엔컴즈 김종학 110111-4805812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7층 (청담동, 금하빌딩)
2	202887	2018.5.3.	주식회사 트리포드 장민호 110111-3232660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6층 1601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3	202888	2018.5.3.	주식회사 케이이씨다바이스 이종수 110111-3482728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5(양재동)
4	202889	2018.5.3.	주식회사 에스제이네트워크솔루션 이혜숙 110111-6706860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13, 2층 (석촌동)
5	202890	2018.5.3.	근우이엔비 주식회사 김재진 110111-111187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0, 2층 (서초동, 백아빌딩)
6	202891	2018.5.9.	주식회사 엠티커뮤니케이션 최원천 110111-60492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906호 (여의도동, 서린빌딩)
7	202892	2018.5.9.	원비즈넷 주식회사 김재한 110111-6705929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53, 1612호 (총정로2가,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8	202893	2018.5.9.	한국정보통신기술 주식회사 김보아 110111-667.4463	서울 광진구 능동로37길 6, 304 (중곡동, 에이제트0213오피스텔)
9	202894	2018.5.11.	키스톤엔컴퍼니 주식회사 이준희 110111-628691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제2층 제207호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3)
10	202895	2018.5.11.	주식회사 소프트트레인 안성우 110111-36668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2, 1507호, 1508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1	202896	2018.5.16.	주식회사 와이엠디앤디 이요민 110111-509262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2, 2층(서초동)
12	202897	2018.5.16.	주식회사 애즈원 이정재 110111-614.9606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5층 502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13	202898	2018.5.17.	주식회사 파이오링크 조영철 110111-203557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동 401호 (가산동, 아이티캐슬)
14	202899	2018.5.17.	주식회사 상화 정범준 110111-375123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12 (삼성동, 상화빌딩)
15	202900	2018.5.2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광희 114921-0003609	서울 강서구 허준로 95-9, 301호(가양동)
16	202901	2018.5.25.	주식회사 에이쓰리시큐리티 한재호 110111-624799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1603호, 1604호, 1605호, 1606호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7	202902	2018.5.28.	주식회사 씨디엠비 김진 110111-5233294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7, 421호 (방화동, 방화샤르망1차)
18	202903	2018.5.31.	주식회사 위드넷 장성일 110111-5645746	서울 송파구 중대로10길 25, 2층(가락동)
19	202904	2018.5.31.	주식회사 대광사업단 박선희 110111-5694149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8, 3층 (주)대광사업단 (신길동, 케이티대방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201201	2018.5.3.	주식회사 주원시스템 라승복 110111-6640125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49, 2층(수유동)	법인 전환
2	140280	2018.5.18.	주식회사 시우이앤씨 김희근 134111-0388963	서울 노원구 덕릉로 804, 210호 (상계동, 상계6구역51블럭1롯데상계대림프라자)	분할 합병
3	110459	2018.5.23.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김대철 110111-674000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분할
4	200324	2018.5.23.	주식회사 에이엔피네트 김효일 110111-1474727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8, 307호 308호 (역삼동, 한성빌딩)	분할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6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상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정계수 신설

1) 신·재생에너지 : 연료전지(PAFC) 보정계수 신설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연료전지	PAFC	8,785	kWh/kW·yr	4.65

2) 대체에너지: 상수열 보정계수 신설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kW.yr)	보정계수
상수열	1,723	0.38

※ 상수열은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경우에만 적용

나.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의 경우, 해당 설비 생산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 BIPV로 간주하여 보정계수 적용

다. 대체에너지 중 사업부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적용방식 변경

- 현행 :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를 사업부지 외부 설치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개정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을 외부(서울시내로 한정)에 시설 신규 설치 시 인정(직접 사용여부는 무관하나,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공급 받는 집단에너지는 대체에너지 인정 대상에서 제외

마.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18. 7.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 2133-3570, FAX 2133-1020, E-mail: 20090715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담당 이종원							
4. 근거법령명등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관 련 규제수		4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 이행 대상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의 경우 BIPV로 간주 －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에 PAFC 연료전지 신설 － 서울시내 한정 사업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직접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대상 에너지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 대체에너지원 중 상수열의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에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 은 대체에너지로서 집단에너지 불인정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이하 ‘환경초안작성 지침’) 중 온실가스 분야에서 민간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 계획 수립 시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용에 대해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을 경우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축·증축·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규정에 따라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하 ‘산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이하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앞서 설명한 대로 ‘산자부 고시’와 ‘에너지공단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생산 계획을 사업자가 작성하기 위한 맞춤형 산정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본 지침은 대상 사업자의 계획 수립을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미활용 에너지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개정하고 있음
- 그에따라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부분에서 신규 보정계수를 신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적용이 모호한 부분은 적용 기준을 신설하였음. 이와 관련된 개정·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태양광은 패널의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식, 추적식, BIPV(건물일체형)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세대가 직접 태양광 발전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의 경우, 기존 구분 방식으로는 적용이 모호하므로, 개별 세대가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빌트인 설비 기능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이를 BIPV로 간주함을 명시하여 혼동 방지.
 - ‘산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는 없는 신에너지인 PAFC(인산형 연료전지)의 단위 에너지 생산량과 보정계수를 현행 ‘에너지공단 지침’ 산정 기준에 맞춰 재고시를 하였음
 - 본 지침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업대상지 외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운영세칙’에 반영되어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기에, 본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직접 수급받는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대체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게 되므로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서울시를 하나의 에너지 사용 권역으로 간주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서울시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분을 상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대서울 시내까지 확대하여, 서울시내 한정 대상 사업지 외부에 신규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직접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그 생산량을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자 함. 단, 이 경우에서 자가용 연료전지는 실 가동률이 매우 낮아, 개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대상 에너지원에서 제외함

- 서울시 지하에 매설된 광역상수도망과 지상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상수열은 지열과 같이 건물 보조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활용에너지원이므로 별도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필요하여 신설함
- 대체에너지는 서울 내에서 개발·활용 가능한 비신·재생에너지원 이용 확대로 대상 사업지는 물론 서울의 에너지 자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러한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간주·인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대체에너지 채택·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의무도입 대상 공동주택은 이러한 대체에너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기에, 이를 적용 예외로 정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기존 지침에서는 연료전지의 원별보정계수가 PEMFC(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별보정계수에 연료전지 중 PAFC를 추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두가지 연료전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되어, 이에 PEMFC 수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PEMFC 관련 업체의 의견이 있었음
- 본 지침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PAFC는 이미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본 지침에서 등재하였고, 2017년 4월 ‘에너지공단 지침’ 보정계수 변경에 따라, 보정계수 재산정을 위해 임시로 제외했던 에너지원으로서, 발전방식, 수급상황, 보급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에서 등재를 제외, 유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사유가 없음.
- 다른 의견으로는 최근 공동주택의 개별난방기의 효율이 좋아져서,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집단에너지 난방 간 에너지 효율 차이나 온실가스 저감량 차이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개별난방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과 최근 ‘환경초안작성 지침’이 개정되면서 요구되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이 15%에서 16%로 1% 증가했는데, 대체에너지로서 집단에너지 최대 적용 비율을 현 3%에서 4%로 상향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집단에너지로 냉·난방 요구전량 도입 시, 그 도입 규모에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요구 비율 16% 중 3% 이행 인정)
- 본 지침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원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체에너지로서 집단에너지를 인정하는 것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것이기에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여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과는 무관한 사항임.

- 그리고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와 합리적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단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 법령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음.
- ‘환경초안작성 지침’이 개정되면서 건물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요구 비율을 높인 취지는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방식이 냉·난방 열 요구량을 전량 집단에너지로 수급 했을 때, 고정 비율로 대체에너지로서 인정하는 방식인 만큼, 의견대로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높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만큼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고정비율을 높인다면 집단에너지 도입 대상 사업자는 ‘환경초안작성 지침’ 개정 전의 신재생에너지 요구비율만큼만 설치해도, 개정 후의 신재생에너지 요구비율을 충족하게 되므로, 해당 비율을 높이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됨. 그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비율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신설, 변경되는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은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선택·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서울시에만 약 4만여개가 설치되어 있어 보급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
- PAFC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이미 본 지침에서 2014년 7월에 신설·운용하던 것으로, 그 산정기준이 되는 ‘에너지공단 지침’의 개정에 따라 임시로 2017년 4월 삭제하였다가, ‘에너지공단 지침’ 산정 기준에 맞춰 보정계수를 재산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국내에 PAFC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조달이 가능한 제품임.
- 상수열의 경우, 지열과 같이 보조 냉·난방 열원으로서 기능하므로, 별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신설하였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2014년 도입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으므로 보급 확대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본 지침은 ‘산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산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본 지침 개정(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본 지침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은 공공기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담고있지 않아, 본 지침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이번 지침 개정(안)이 에너지원 보정계수 신설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바, 이번 개정(안)이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가능성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정계수는 에너지원별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은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목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준수를 위해 어떤 에너지를 도입하든 비용이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이에 따라 신규 에너지원 보정계수 도입 등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신규 에너지원 보정계수 도입으로 대상 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보급에 따른 서울의 에너지자립 상승효과 기대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으로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신설되는 에너지원 보정계수는 ‘에너지공단 지침’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되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지침 적용 방식 상 존속기한은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불필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초안작성 지침’ 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구비서류나 처리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7호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46호(1987. 04. 27.)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20호(2018. 04. 19.)호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원의 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1. 공 원 명 : 시민의숲 근린공원
2.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정비
 - 붙임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서 참조
4.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시설과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02-2181-1162)
9. 불 입 :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 1부.

<붙임>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58,991.5	56,115.17	15	4,652.7	6,841.64	206	258,991.5	57,293.14	15	4,818.08	7,007.02	207	증) 1,067.72㎡
기 반 시 설	소계	23,239.35	23,239.35					23,469.35	23,469.35					증)230㎡
	도로	20,060	20,060					20,290	20,290					
	광장	3,179.35	3,179.35					3,179.35	3,179.35					
조경시설		7,618.4	7,618.4				5	7,618.40	7,618.40				5	
휴양시설							1						1	
유흥시설														
운동시설		11,917.02	11,917.02	1	2,154.6	2,154.6		11,917.02	11,917.02	1	2,154.6	2,154.6		
교양시설		8,709.79	8,709.79	3	1,571.75	3,384.85	5	8,820.04	8,820.04	3	1,171.99	2,985.09	6	
편익시설		3,381.56	3,381.56	8	410.8	410.8	9	3,413.28	3,413.28	7	509.94	509.94	9	증)31.71㎡
관리시설		1,249.05	1,249.05	3	515.55	891.39	186	2,055.05	2,055.05	4	981.55	1,357.39	186	증)806㎡
녹지·기타		202,876.33						201,695.36						감) 1,067.72㎡
시설율 40%이하		(56,225.42 / 258,991.50) x 100 = 21.709%						(57,293.14 / 258,991.50) x 100 = 22.121%						증)0.412%
건폐율 10%이하		(4,252.94 / 258,991.50) x 100 = 1.642%						(4,252.94 / 258,991.50) x 100 = 1.860%						증)0.2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86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임금·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1항)

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2항)

다. 도급비 50억원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8, FAX 2133-0745, E-mail : hongda@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임금체불 등 부조리 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을 신설코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전 상정 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계약 상대자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팀장 류용열, 담당 윤희태								
4. 근거법령명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행정 자치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와 계약하는 건설공사업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도급비 50억원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허위신고 방지, 임금체불 방지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지난 ' 15.2.11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시 붕괴 사고에 따른 사고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돼 사고대책 마련에 어려움과 언론비판 보도가 있었으며,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은 수기 작성에 의한 근로자 출역 관리를 하였음
- 특히, 계약상대방이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전산적으로 인력관리 함으로서 퇴직공제 신고업무를 감소될 수 있으며, 노무비 지급내역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를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건설근로자는 체계적인 경력을 관리하게 됨으로서 타 사업장 취업이 용이하는 한편 불법외국근로자 취업억제 효과가 기대됨
- 그동안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기대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확대시행 하고 있으나, 의무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음.
 -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법률 개정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개정안 통과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건설현장 규모를 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시행하게 하게 되면 건설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을 정확하게 적립되고 향후 대금e바로 시스템과의 검증을 통하여 노무비 지급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체계적인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 ‘2. 계약문서’ 중 ‘다’ 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 바 ‘공공계약’ 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4두11328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 역비반납처분취소 [공2018상,568])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8.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의거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지운다는 사정’ 이외에,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 함.
-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투입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자화하여 퇴직공제부금을 정확하게 적립하는 등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의무사용을 도입하는 것은 공익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시가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공익성이 계약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기준의 적정성이 입증되고,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위 조건에 대한 자기구속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이라 보기 어려움.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의무시행 대상 건설현장의 계약상대방은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구매·설치하고 공사기간 중 기기를 유지 관리 비용은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시)으로서 도입비 50억원 기준시 0.146%에 불과함
- 전자카드 발급 비용은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함으로 별도 비용은 없음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얻는 편익에는 근로자 관리의 편의성, 근로내역신고 정확성과 신속성 등이 있으며,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적립금 증가 및 체불임금 감소 등으로 인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전자인력관리제 사용을 의무화하면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게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입찰에 참가할 업체 및 계약상대방이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고서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음.
- 계약상대방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따른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지라도,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 보다 공익성이 훨씬 크므로 이와 같은 특수조건 설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2항라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하여도 「지방계약법」 등에 저촉 및 위반될 만큼 과도하게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규칙 등 하위법규 계획(안)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12.16, 홍영표 의원 등 10인, 환노위)이 국회에 계류중임

※ 개정안

- ◆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37호(2018.05.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고시되고, 종로구 공고 제2018-462호(2018.5.17.)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다. 사업의 면적 : 419.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간

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2148-2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통의동	7-3	대	419.4	유인희	419.4분의 361.7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5-19				
					영보합명 회사	419.4분의 57.68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				

물 건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해 당 없 음											

◆ **종로구고시 제2018-53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76호(2017.07.2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고시되고, 종로구공고 제2018-31호(2018.01.09.)로 실시계획 열람 . 공고한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추진 중 영업권 소유자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66-2(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43.7㎡(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변경)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2148-2862)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대	43.7	김옥주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범	7분의 3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현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건물	목조 1층	30.6	김옥주	4분의 2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박재범	4분의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박재현	4분의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종로구 창신동	266-2	중개업	신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1식	김영환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음식업	뫼난이 닭강정	1식	김순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변경	종로구 창신동	266-2	중개업	신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1식	조익환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음식업	뫼난이 닭강정	1식	김순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 중구고시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66호(1977.10.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88-1 ~ 의주로1가 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사유

-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과 실제 하수시설물 매설 위치가 상이하여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수도	충정로1가 88-3	의주로1가 44	통일로 4길	0.354	3m×3면	서울특별시고시 제366호 (1977.10.25.)	
변경	2	하수도	충정로1가 88-3	의주로1가 44	통일로 4길	0.354	3m×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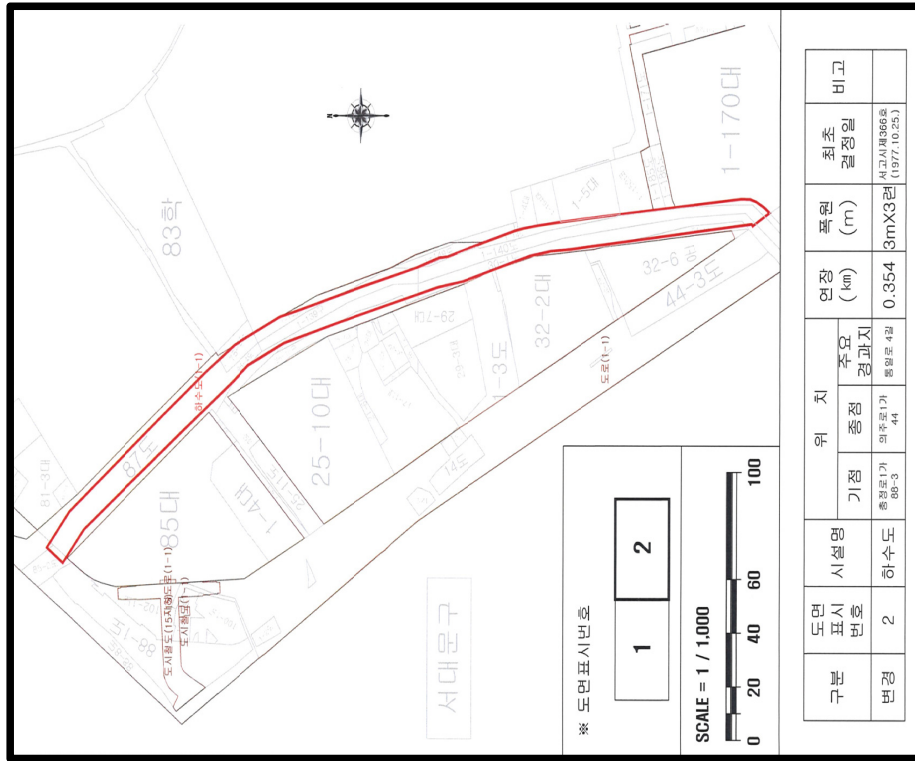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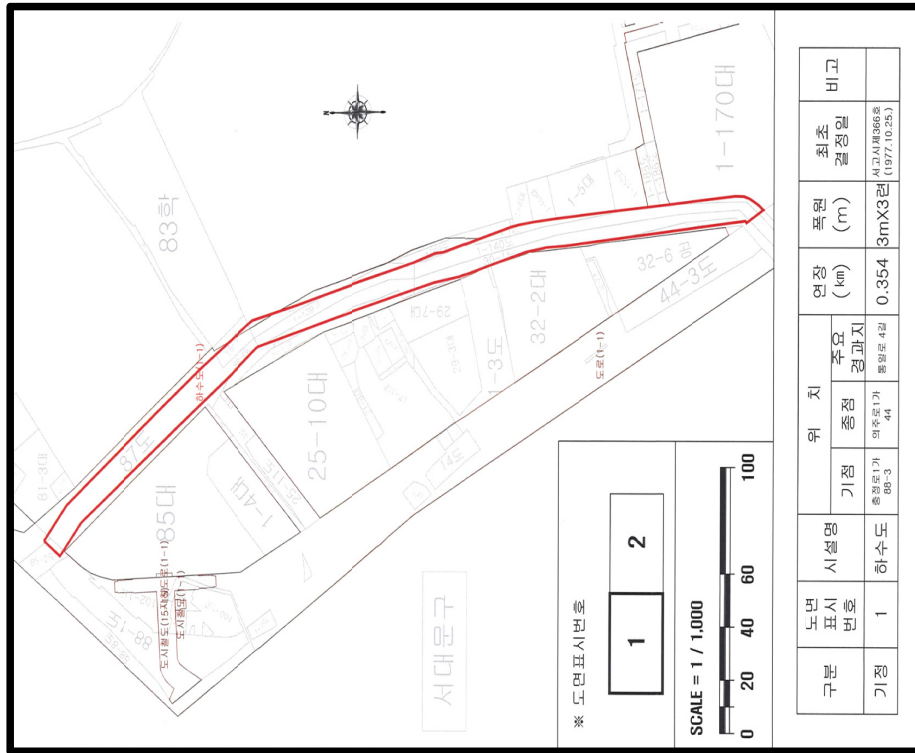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도시계획선 변경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과 실제 하수시설물 매설 위치가 상이하여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선 변경 필요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중복 결정도(중구청 도심재생과 및 안전치수과에 비치)

4.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4) 및 안전치수과(☎ 02-3396-61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도



◆ 성북구고시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76호(1978.6.12.)로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95호(1978.8.8.)로 지적 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하월곡동 80-72 ~ 81-92간 도로개설사업	하월곡동 81-87 ~ 81-88	B = 6m L = 12m	서울시고시 제276호 (1978.6.12.)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0.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따로붙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2241-3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80-72 ~ 81-92간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81-573	대	23	23	최강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88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81-88에서 분할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80-72 ~ 81-92간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제 목 이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81-88	건물	연외조	13 답장 1식		최강우	서울 성북구 오페산로17길 12-3 (하월곡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 마포구고시 제2018-72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4호(2014.4.3)로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경계명시 측량(분할측량)결과에 따라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동교동 190-1 번지 일대	20,844	감)10.6	20,833.4	2014.4.3 서고 2014-134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면적 조정: 20,844㎡→20,833.4㎡	• 경계명시 측량(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844	-	20,833.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19	-	7,519	36.1	
	준주거지역	13,325	감) 10.6	13,314.4	63.9	

나. 용도지구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개발진흥 지구	특정개발 진흥지구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20,844)	서고2010-21호 (‘10.1.28)	-
변경	-	개발진흥 지구	특정개발 진흥지구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20,833.4)	서고2010-21호 (‘10.1.28)	-

※ 위치,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2-234	철도	광역철도 (홍대정거장)	마포구 동교동 190-1	마포구 동교동 191-2	-	165	23,520 (20,844)	건고2006-382호 (‘06.9.20)	
변경	12-234	철도	광역철도 (홍대정거장)	마포구 동교동 190-1	마포구 동교동 191-2	-	165	23,520 (20,833.4)	건고2006-382호 (‘06.9.20)	

※ 위치,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획지 결정(변경) 조서(규제)

구분	도면표시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획지①	1BL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20,844	- 단일 도시계획시설부지 (철도시설:홍대정거장)인 대상지 전체를 단일획지로 지정 ※중복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획지 내 포함 (수직적 범위가 유효높이 6m로 한정)
변경	-	1BL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20,833.4	- 단일 도시계획시설부지 (철도시설:홍대정거장)인 대상지 전체를 단일획지로 지정 ※중복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획지 내 포함 (수직적 범위가 유효높이 6m로 한정)

5)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3.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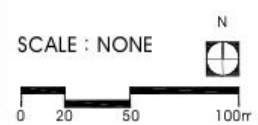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



-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강서구고시 제2018-6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359호(2004.11.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사업의 명칭 : 개화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42-10번지

다. 사업의 규모 : 7,100㎡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방화동 신142-10	임야	7,100	7,100	김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90, 211동 101호 (우면동, 서초힐스아파트)	2/3				
					김현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90, 211동 101호 (우면동, 서초힐스아파트)	1/3				

◆ 강서구고시 제2018-69호

도시계획시설(평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평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8-716호(2018. 5. 24)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평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6-1번지 외 3필지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2,765㎡, 분묘4기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1) 당초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 2)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합계	2필지		2,765	2,765							
1	방화동 산137	임야	1,983	1,983	7/2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 동신아파트 101동 706호	권영찬				
					1/2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6	권혜자				
					7/2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01 극동아파트 8동 1202호	조양금				
					6/21	대전시 유성구 어은로57, 101동 1202호 (어은동, 한빛아파트)	권오상				
2	방화동 산36-1	임야	782	782	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 물건조서 : 분묘 등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연 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방화동 산137	분묘	2기	이재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91-47, 502호	
2	개화동 산2-1	분묘	1기	이재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91-47, 502호	
3	방화동 산136-3	분묘	1기	강인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8길 104, 301호	

◆ 구로구고시 제2018-119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위한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구로구청장

1. 대상지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오류동172-2번지 일대	12,746.5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중

2. 제한사유

가. 본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바, 현 단계에서 개발행위 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미달 될 우려가 있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방지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행위제한을 시행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4. 행위제한 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2) 단, 가설건축물은 사업시행 3개월 전까지 자진 철거 조건 시 가능

나. 토지의 분할

5. 행위제한 제외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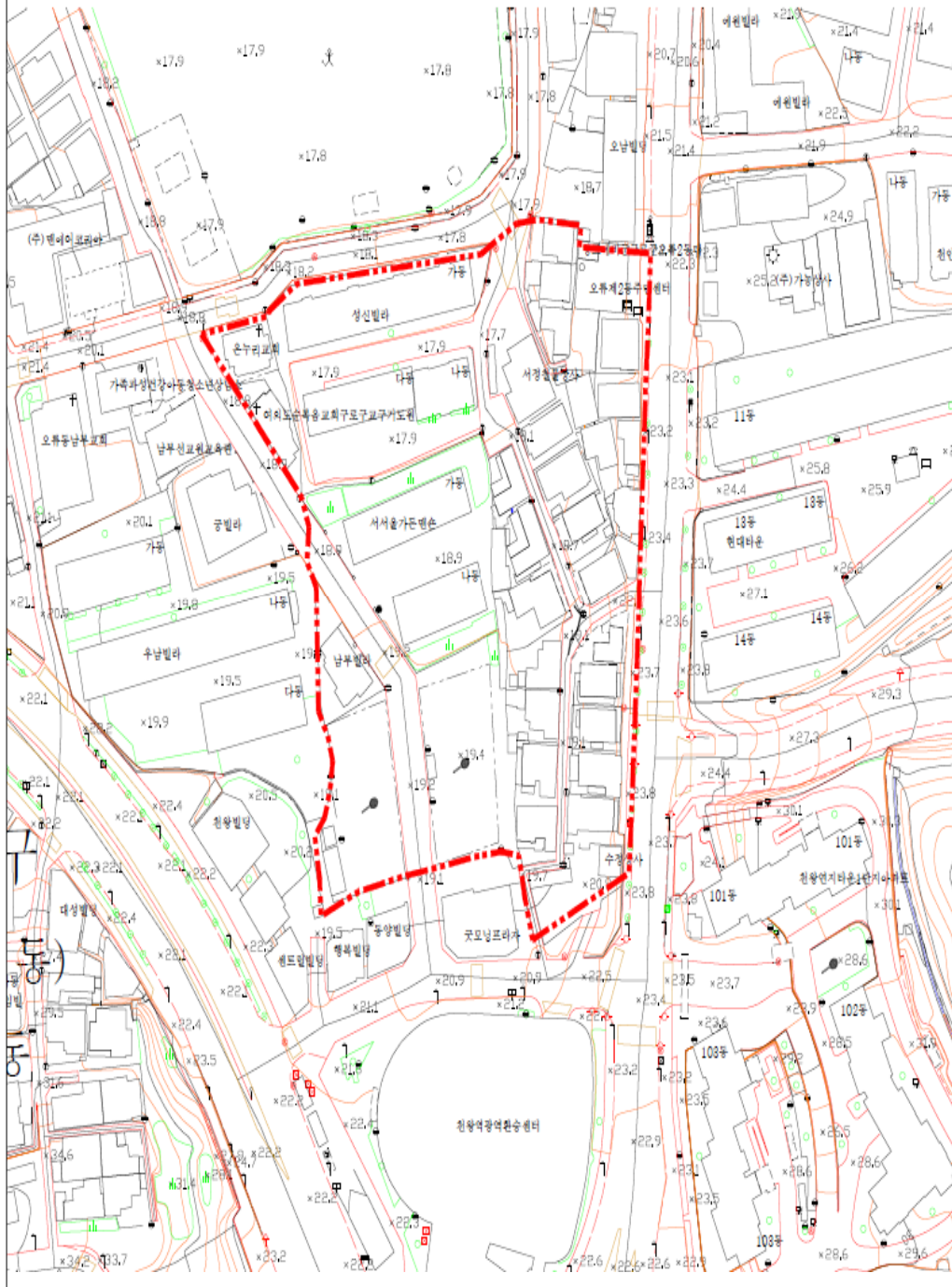
다.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

6. 관련도서 : 생략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강남구고시 제2018-91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79호(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47,659.0	-	47,659.0	-

2. 정비계획(변경)

-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59.0	-	47,659.0	100.0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659.0	-	47,659.0	• 사업지 공공보행통로 수정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주택용지	획 지 1	43,569.0	-	43,569.0	-
기부채납용지	소 계	4,090.0	-	4,090.0	•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4,149.67㎡(순부담 8.71%) - 공원, 도로 : 3,692㎡ - 어린이집부지 : 398㎡(매입 후 기부채납) - 시설연면적: 710㎡(설치 후 기부채납) → 토지로 환산: 59.67㎡
	도 로	792.0	-	792.0	
	공 원	2,900.0	-	2,900.0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398.0	-	398.0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3	70~73	주간선 도로	3,630(103)	청담동(영동교남단)	광장 86호	일반 도로	'71.4.7(건고 198)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기정	광로	3	19	40~120	주간선 도로	35,077(158)	삼전동	방화동	자동차 전용도로	'69.8.7(건고 503)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주) 연장 항목의 ()안은 대상지 연접부 수치임

나) 공 원(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대치동66번지	2,900.0	-	2,900.0	서고 325호(13. 10. 04)	-

다)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대치동 59-6	398.0	-	398.0	서고 325호(13. 10. 04)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7,659.0	대치동 66번지 일대	6	-	-	6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대치쌍용 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47,659.0	획지1	43,569.0	대치동 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0 이하	299.97 이하	최고35층 /110m 이하
			획지2	398.0	대치동 59-6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주택공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국토부고시 제4-3)적용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100	100.0	-				
			60㎡이하	304	27.7	임대 137세대포함				
60~85㎡이하			472	42.8	-					
85㎡초과	324	29.5	-							
		●건설면적 비용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세대수의 70.5%, 전체 연면적의 60.07%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신재생에너지: 2%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3m •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건축한계선 3m • 대로3-70변: 건축한계선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남부순환로와 영동대로50길로 일반인이 통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향후 대치쌍용2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 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대치쌍용 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47,659.0	획지1	43,569.0	대치동 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0 이하	299.90 이하	최고35층 /110m 이하
			획지2	398.0	대치동 59-6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주택공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국토부고시 제4-3)적용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072	100.0	-			
			60㎡이하		278	25.9	임대 132세대포함			
			60~85㎡이하		479	44.7	-			
			85㎡초과		315	29.4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세대수의 70.6%, 전체 연면적의 60.54%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신재생에너지: 2%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3m •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건축한계선 3m • 대로3-70변: 건축한계선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남부순환로와 영동대로50길로 일반인이 통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향후 대치쌍용2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변경)

구분		산 정 내 용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보육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비고
기정	토지 이용 계획	47,659.0㎡	43,569.0㎡	4,090.0㎡	398.0㎡	59.67㎡ (건축물기부채납을 토지면적 환산)
변경		47,659.0㎡	43,569.0㎡	4,090.0㎡	398.0㎡	59.67㎡ (건축물기부채납을 토지면적 환산)

구분		산 정 내 용			
기정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090.00㎡ + 59.67㎡ - 0㎡ = 4,149.67㎡ ※ 구역내 국공유지 398㎡는 주민이 매입 후 어린이집부지로 기부채납 하므로 제하지 않음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우수디자인		5%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 무량판 구조	7%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건축비의 1% 이상) 소 계	2%	-
합 계		14%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14%) = 224%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250%적용)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 을 제외한 대지면적 = 4,149.67 / (47,659-4,149.67) = 0.0954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시설설치비용 환산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97%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변경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090.00㎡ + 59.67㎡ - 0㎡ = 4,149.67㎡ ※ 구역내 국공유지 398㎡는 주민이 매입 후 어린이집부지로 기부채납 하므로 제하지 않음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우수디자인		5%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 무량판 구조	7%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건축비의 1% 이상) 소 계	2%	-
합 계		14%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14%) = 224%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 을 제외한 대지면적 = 4,149.67 / (47,659-4,149.67) = 0.0954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시설설치비용 환산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90%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 공공시설 등 설치에 따른 환산 부지면적(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어린이집 설치비용 산정	① 연면적	710㎡	-
	② 표준건축비	1,664,000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74호
	③ 보육시설 설치비용(①×②)	1,181,440,000원	-
부지가액 산정	④ 개별공시지가	9,900,000원/㎡	2013.1.1기준
	⑤ 부지가액	19,800,000원/㎡	공시지가 2배적용
▷시설비용 환산부지면적	⑥ 보육시설설치비용/부지가액 (③/⑤)	59.67㎡	-
▷시설설치 대지면적	⑦ 대치동 59-6, 62-12	398㎡	매입 후 기부채납
▷순부담 인정	⑥ + ⑦	457.67㎡	-

※ 건축물 시설기부채납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 시행인가 시 최종 결정

5)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동)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대치동 66번지	43,569	-	10,899.99	137	59.99㎡ : 137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변경		43,569	-	10,928.15	132	59.43㎡ : 132세대	

■ 재건축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분		적용산식		비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99.97%	-
		정비계획 용적률	25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99.97\% - 250.00\%) \times 50\% = 24.9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text{증가된 용적률의 } 50\% \times \text{순 사업부지 면적}$ $= 24.985\% \times 43,569\text{m}^2 = 10,885.71\text{m}^2$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0,899.99m² • 세대수 : 137세대 - 전용 59.99m²(공급 79.562m²) : 137세대		기준이상 확보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99.90%	-
		정비계획 용적률	25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99.90\% - 250.00\%) \times 50\% = 24.950\%$		
	연면적 환산	$\text{증가된 용적률의 } 50\% \times \text{순 사업부지 면적}$ $= 24.950\% \times 43,569\text{m}^2 = 10,870.47\text{m}^2$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0,928.15m² • 세대수 : 132세대 - 전용 59.43m²(공급 82.789m²) : 132세대		

6)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 이내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630세대 계획 : 1,100세대 (증 470대)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현황 : 630세대 계획 : 1,072세대 (증 442대)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계획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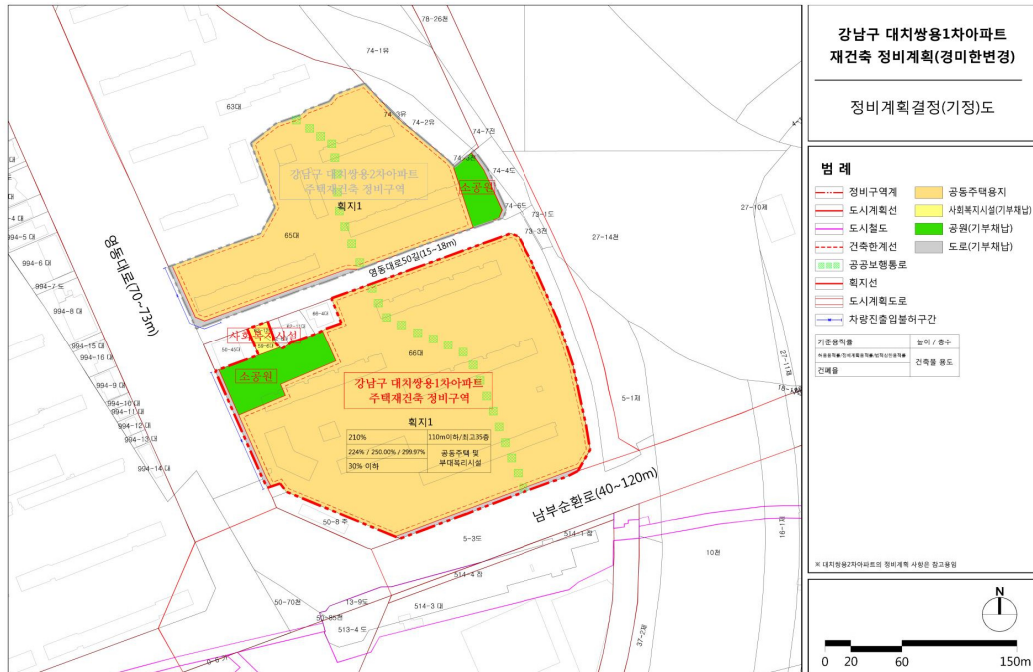
4. 관련서류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강남구청 주택사업과(☎02-3423-60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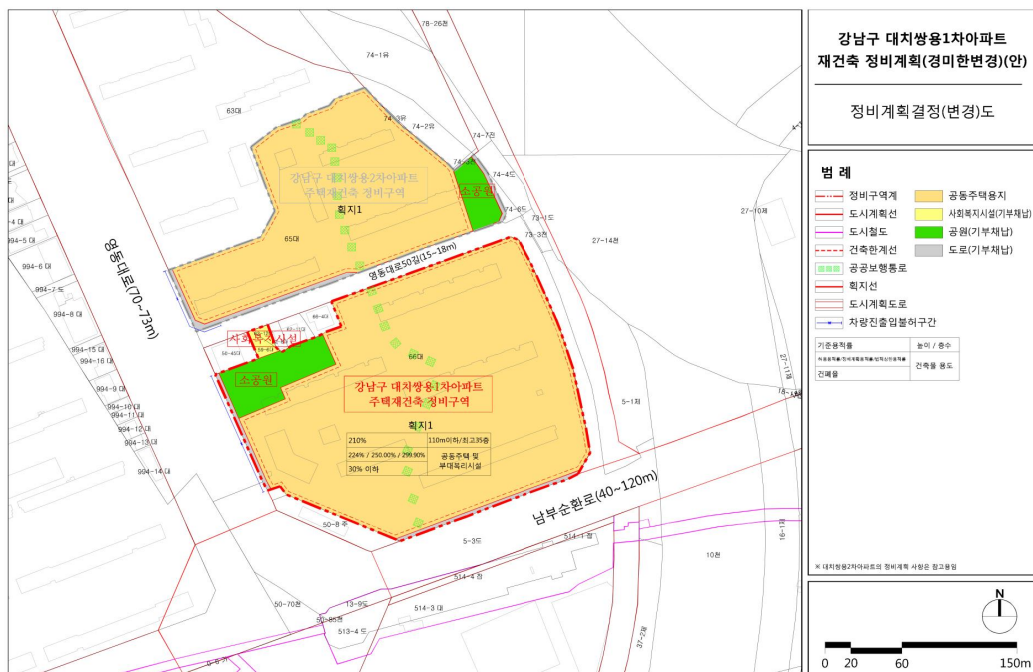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비계획결정(기정)도



2. 정비계획결정(변경)도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5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2016.3.17 ~ 2018.10.31

└ 변경 : 2016.3.17 ~ 2021.03.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 계				111,902.3	
1	방이동 88-15	학	107,322.8	107,322.8	한국체육대학교
2	88-19	도	4,579.5	4,579.5	"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 강동구고시 제2018-1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7호(2018.4.5.)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3425-6440)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1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명일근린공원 도시농업체험관 건립

라. 사업의내용 : 명일근린공원 도시농업체험관 설치

마. 규 모 : 도시농업체험관(파믹스센터) 1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연면적 397.14㎡)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필지		1,000	1,000							
1	산62-1	전	1,000	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8-565호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호(2007.1.11.)로 결정된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인동 313-17번지의 7필지 획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2)
3. 열람내용 : 승인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 변경 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변경 결정(안) 조서
 - 가.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획지계획 :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 재 지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 번			
기정	A10	1	송인동	313-5대, 313-16대, 313-17대, 313-19대, 318-21대, 318-22대	594.2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2	송인동	316-1대	176.6	획지선 지정	
		4	송인동	317-19대	217.2	획지선 지정	
변경	A10	1	송인동	313-16대	99.2	필지단위	
		2	송인동	313-5대, 313-17대, 313-19대, 316-1대, 317-19대, 318-21대, 318-22대	888.8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획지A10-1, 2, 4 하나의 획지로 통합 및 송인동 316-1번지 필지단위 계획	연접한 3개 획지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여 번지는 획지에서 제외하고 필지단위로 계획함으로써 실현성 제고 및 원활한 도시정비 도모

라. 그 외 변경사항 없음

5.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18-5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2017.6.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3 문화공원(가칭)’ 등 공원7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한남3문화공원(가칭)’ 등 7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126일대 등 7개소

3. 면 적 : 7개소, 총 27,261㎡

※ 세부내용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일(최초)	비 고
계	7개소		27,261		
1	한남3문화공원(가칭)	한남동732-126일대	4,045	서고223호(2017.6.29)	
2	한남4문화공원(가칭)	한남동620-171일대	6,135	서고223호(2017.6.29)	
3	한남1어린이공원(가칭)	보광동8-3일대	1,612	서고387호(2009.10.1)	
4	한남3어린이공원(가칭)	보광동35-13일대	5,973	서고223호(2017.6.29)	
5	한남2소공원(가칭)	한남동766-2일대	4,645	서고387호(2009.10.1)	
6	한남3소공원(가칭)	한남동568-105일대	2,575	서고223호(2017.6.29)	
7	한남4소공원(가칭)	한남동561-1일대	2,276	서고223호(2017.6.29)	

4. 공원조성계획(안) : 열람장소에 비치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 (☎ 02-2199-7603)

8.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은평구공고 제2018-8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2-83호(2012.12.2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3-67호(2013.8.29)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4-71호(2014.10.16), 은평구 고시 제2016-33호(2016.4.28), 은평구 고시 제2017-89호(2017.9.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 정거장)사업
- 2) 명 칭 : 녹번역(3호선) 출입구 #1, #2번 이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5번지 부근

다. 사업시행 기간 : 2016. 9월 ~ 2018. 6. 12.

라. 규모 및 면적

구분	규 모	면 적
녹번역(3호선) 출입구#1이설	폭원:4.0m, 연장:32.9m	303㎡
녹번역(3호선) 출입구#2이설	폭원:4.0m, 연장:25.4m	239㎡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277 대림상가 B동 203호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관련기관)

◆ 구로구공고 제2018-9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286호(1989. 6.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서울시 구로구고시 제2015-39호(2015. 3.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115호(2017. 7.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공고 제2017-1179호(2017. 8.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고시 제2017-143호(2017. 8.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고척돔구장 옆 보행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주)귀뚜라미 에너지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6길51(고척동)

다. 사업완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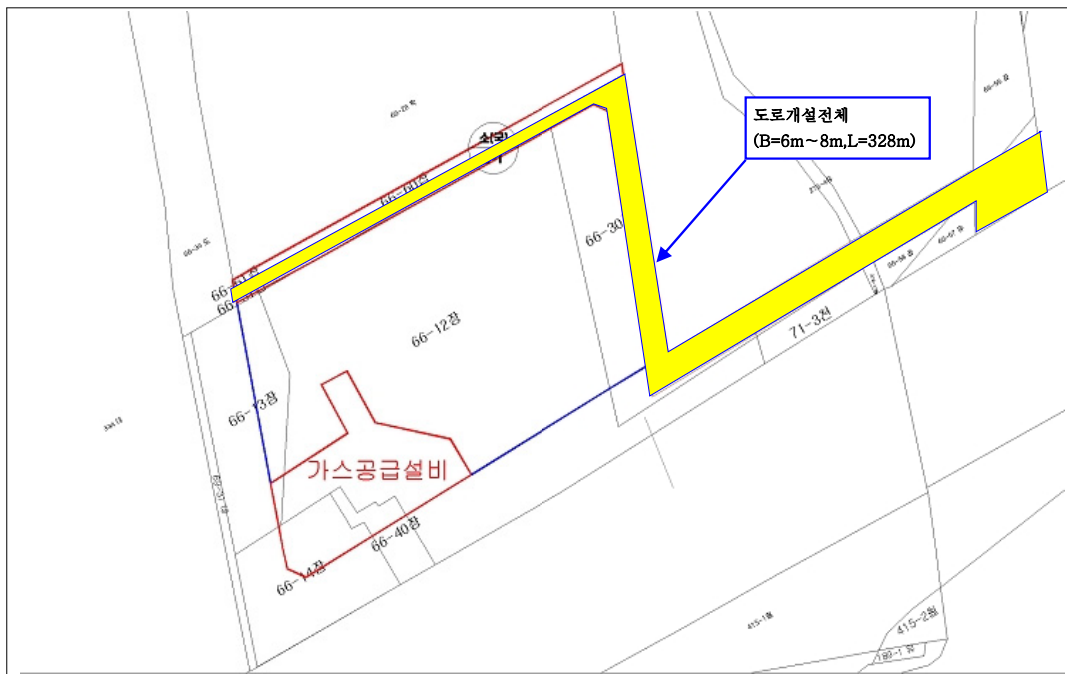
사 업 명 칭 (위 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고척돔구장 옆 보행로 개설공사 (구로구 고척동66-13~66-63번지 일대)	폭 6~8m 연장 328m	구로구고시 제2017-143호 (2017.8.31)	2017.09.01 ~2018.6.05	2018.6.18

라. 관련서류는 구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60-3126)

□ 위치도



□ 도로 개설구간



☐ 도로개설 공사전



☐ 도로개설 완료후



☐ 도로개설 공사전



☐ 도로개설 완료후



☐ 도로개설 공사전



☐ 도로개설 완료후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이에이치알 앤씨(주)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A106호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김포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한강 내 수질조사	' 18.06.14.~ ' 18.06.22.	' 18. 06.12.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8-14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8.6.14. ~ 2018.6.2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8.6.28. ~ 2018.7.1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승달 대상내역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별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72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장*근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명시 서원 로 **	동 ***호 (소하 동, 광명역세권 휴먼 시아)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4	바퀴가 있는 동력장 차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이*규(자*성)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여의도동, 가든 빌딩)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6	바퀴가 있는 동력장 차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김*구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산대로*길 ***	(보광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5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이*길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광명 로***번길 ***	***호 (관양동, 동아 빌라)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1	바퀴가 있는 동력장 차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이*혁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네방로*길 *-*	*층 (아현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2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양*호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흥안대로 ***	***호 (관양동, 인터 원 스타타워)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8	바퀴가 있는 동력장 차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오*수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동 ***호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아파트)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88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안*현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신원로 **	***호 (신원동, 신원마을* 단지 상층 동원스위 트*차)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53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이*진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남계로**길 **	***호 (화학동, 골드 캐슬1)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68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이*승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위티*로 **	***호 ***호 (식사 동, 위티힐신블루 밍*단지)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96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	50,000	유*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부천로**번길 **	***호 (신곡동, 서해 센스빌)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3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김*남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 ***호 (수서 동, 강남대시앙포레)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4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김*환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길 ***	지출***호 (염창동, 지음)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99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	50,000	허*상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북양로**번길 ***	***호 (북양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6	목판한 애안건을 착용 할 수 있는 줄입하 는 행위	50,000	이*자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양로**길 ***	(구의동, 임송빌라)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7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JIN*ONG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원로**길 ***	***호 (지양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영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76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지*선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로**길 ***	(석관동)

선택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39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김*진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킨고랑로**길 **	B**호 (중곡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0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김*휘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층 (성수동*가)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2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홍*웅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로운원로**길 *	(신월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78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박*동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길 ***-**	(구로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5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이*진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가길 ***-**	(성수동*가)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81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박*성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성저로**번길 **	(대화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7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황*석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길 *	(마장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49	지정된 장소 외의 장 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신*수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가동 B***호 (역삼 동, 대원빌라)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0850	바위가 있는 동원장 지를 이용하여 차도하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이*희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길 **	***호 (시흥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8-14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8.6.21. ~ 2018.7.4.(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8.7.5. ~ 2018.7.18.(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충달 대상 내역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36	1	박*오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 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도림로**길 *	(문래동*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37	1	김*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항 대 로 * * 길 ***-	지층***호 (염창동, 지층)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38	1	전*일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사 성로***번길 **	***동 ***호 (철산동, 광복현대 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40	1	김*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항 대 로 * * 길 ***-	지층***호 (염창동, 지층)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42	1	최*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신길로**바길 *-*	(신길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47	1	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호 (문정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49	1	현*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동 ***호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52	1	신*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번길 ***	*동 ***호 (잔전 동, 대신아트빌라)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54	1	유*미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	***동 ***호 (평내동, 평내마을 대주파크빌)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55	1	서*종합건설 (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	****호 (강일동, 강일큐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58	1	조*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번길 *-*	미동 ***호 (다산 동, 소망빌라)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59	1	김*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	(수색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60	1	조*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번길 *-*	미동 ***호 (다산 동, 소망빌라)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61	1	양*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안*길 **	(봉천동, 신화로 즈빌)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64	1	김*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	(수색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66	1	정*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중앙대학로 **	***호 (대덕면)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67	1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길 **	나동 ***호 (신월 동, 우일빌라)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72	1	오*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로 ***	***동 ****호 (별내동, 남양주별 내리수빌아파트)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76	1	김*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 길 ***-**	***호 (부개동, 한 성빌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78	1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	****동 ****호 (마곡동, 마곡엠벨 리 **단지)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91	1	권*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 파 로 * * 길 ***	지*층 비**호 (청파동*가)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92	1	반*옥, 신*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	****동 ***호 (길 음동, 길음뉴타운)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93	1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제기로*가길 ***	(제기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494	1	(주)두*PnC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수원시 팔 달구 경수대로 ***	(인계동, 신영빌딩)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01	1	이*송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 안구 하북로**번 길 **	****동 ***호 (천 전동, 삼조덕아 파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04	1	전*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 사 단 로 *가길 ***	(보광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05	1	윤*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번길 **	(달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07	1	최*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화양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14	1	장*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호 (의정부동, 맥스타워)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17	1	임*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번길 **	***호 (상동, 한솔프라자)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30	1	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가길 **	***호 ***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34	1	이*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가길 **	(길음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36	1	변*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가길 **	(황학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40	1	김*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가길 **	***호 ***호 (갈현동, 현재트윈빌)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45	1	박*용,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호 ***호 (논현동, 아크로힐스노원아파트)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51	1	심*섭, 심*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 * 가길 **	***호 (갈현동, 가연리슈빌)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54	1	김*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번길 **	***호 ***호 (화도읍, 화도효성해림타운레이크스)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55	1	박*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일로 ***	***호 ***호 (공릉동, 노원프리미어스 엠코)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56	1	김*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번길 *	***호 ***호 (부평동, 부평두산위브아파트)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60	1	조*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길 ***-**	지하동 *호호 (양재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62	1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석촌동, 월 드빌라)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65	1	주식회사 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	***, ***, ***호 (송정동, 청주 테 크노 S타워)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70	1	최*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	***동 ***호 (길 음동, 길음뉴타운)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72	1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가세울미래로 *	***동 ***호 (남가좌동, DMC 파크뷰자이)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76	1	유*삼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	(암사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78	1	LI *YUN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라길 ***-**	(구로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79	1	VANDEWEERD *TODD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원로*나길 **	*층 (용산동*가)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84	1	CUI *XIAN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길 ***	B**호 (길음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86	1	김*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	***동 ***호 (태전동, 힐스테이트대전)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90	1	김*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도실길 ***	(돌산읍)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92	1	연*문	바위가 있는 등변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길 *	***호 (구산동, DH펠리스)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93	1	김*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	***호 (목동, 스카이고시원)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95	1	최*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마길 ***	(신길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598	1	김*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마길 ***	(신길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03	1	최*연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수취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	***동 ***호 (구로동, 신도림태영타운)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28	1	이*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번길 **	기동 ***호 (원종동, 신한주택)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0	1	우*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진로**	***호 (답십리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1	1	정*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마길 **	(신림동)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2	1	조*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번길 *	***동 ***호 (마전동, 영남타임스아파트)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6	1	이*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	동 ***호 (신대방동, 보라매역 한세상아파트)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7	1	이*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호 (역촌동, 리더스파크)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8	1	정*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길 **--*	***호 (역촌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39	1	이*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나길 ***	나동 ***호 (성산동, 용주하이츠맨션)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0	1	홍*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	층 (연희동)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1	1	전*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길 **	***호 (신당동)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2	1	민*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길 ***	***호 (신사동)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3	1	김*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호 (신길동, 현대아파트)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6	1	이*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	(창신동)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49	1	김*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	동 ***호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단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51	1	배*숙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길 ***-	지하층 ***호 (은 봉동, 한강빌라)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53	1	SUN *F.U,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길 *-**	***호 (안암동*가)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55	1	홍*영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덕영대로 ***번길 ***-	B동 ***호 (만포 동, 만포삼성원룸)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57	1	전*영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강원도 정선군 북 평면 갈매지길 **	()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58	1	이*훈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보광동)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60	1	성*철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길 **	(성산동, 이룸피 아노)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61	1	이*준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효원로 ***	***호 (매 탄동, 매탄 위브 하늘채)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66	1	박*호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 산서구 덕신로** 번길 **	(구산동)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67	1	신*식	바위가 있는 동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대림로**나길 **	***호 (대림동)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68	1	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가길 **	***호 (송파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71	1	양*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곡로**길 *-*	(신림동)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74	1	김*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길 **	***호 (역삼동, 한화 진넥스빌)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75	1	김*은	비규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연 서 일로 * * 번길 ***-	***호 (철산동)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77	1	김*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	***호 (석촌동, 석촌호수호성해링 턴타워)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78	1	황*광	비규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밀로*가길 *	(구로동)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82	1	공*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문로*길 ***-	***호 (석촌동)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86	1	김*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길 *-**	***호 (오금동)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89	1	정*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	***동 ***호 (하월곡동, 월곡두 신위브아파트)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90	1	오*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신이문로*길 **	(이문동)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693	1	이*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06	1	박*희, 상*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포곡 로***번길 ***-	가동 ***호 (상우빌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08	1	이*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번길 ***	납세지상세 주소 ***호 (부평동, 천 지출터운)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09	1	박*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목로**길 **	납세지상세 주소 ***동***호 (송파동, 래미인송 파파인빌)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14	1	황*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신촌로 ***	납세지상세 주소 B동 ***호 (성곡동, 대덕빌라)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15	1	비*엠바이크 주식회사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	납세지상세 주소 ***호 (길음동)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16	1	고*옥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길 ***	납세지상세 주소 (구의동)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21	1	인*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로**나길 **	납세지상세 주소 B***호 (사근동)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23	1	유*길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 원구 순화로***번 길 **	납세지상세 주소 ***호 (성대원동, 일성아파트)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26	1	김*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왕시 평 의길 **	납세지상세 주소 ***동 ***호 (포일동, 위브호수 미들*단지)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27	1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	납세지상세 주소 ***동 ***호 (행당동, 행당한신 아파트)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30	1	정*운	바퀴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길 **	납세지상세 주소 (망우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32	1	조*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성로 ***	***호 (동인동)*가, 국제보성공원 화성파크드림(CITY)
1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34	1	유*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	(석관동)
1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37	1	박*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번길 **	***호 (연수동)
1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44	1	이*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길 *	***호 (장안동)
1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45	1	이*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면목동)
1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49	1	강*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길 **	***호 (용두동)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53	1	유*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54	1	이*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	*층 (성수동)*가, 신나는어린이집)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57	1	인*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길 **	***호 (번동, 청운*차빌라)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58	1	함*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인창*로 *	***등 ***호 (인창동, 구리 더샵그린포레(*단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59	1	이*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능동로*길 ***	(자양동)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63	1	차*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	(묵동, 매곡카)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65	1	송*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B동 ***호 (석촌동, 트윈스빌)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66	1	김*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호로**가길 **	***호 (강인동, 태솔타운*차)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70	1	김*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가길 *	(용답동)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75	1	LI * KVI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림 피로 **길 ***-**	B***호 (성내동)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76	1	나*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	***동 ***호 (현정아름빌)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79	1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길 *-**	지중 (잠실동)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1	1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	***동 ***호 (돈암동, 돈암교오룡힐체)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2	1	정*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천현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3	1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호 (만우동, 다 인빌라)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5	1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	***호 (보문동*가, 영신아파트)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6	1	이*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구의동)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7	1	강*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자양동)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88	1	주식회사 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	(신장동)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91	1	최*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멍갯로 ***-	0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93	1	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번 길 *-*	***호 (죽도동)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95	1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	***호 (도당동, 미 성하이츠맨션)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798	1	김*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호 (장안동, 파크리움)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02	1	이*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	***등 ***호 (신장동, 대명강변 타운아파트)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04	1	손*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관평로***번 길 *-*	(금관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32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05	1	김*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리로***길 **	****동 ****호 (호매리동, 호매리마을**단지 별첨시드)
133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10	1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동 ****호 (삼성동, 서경아파트)
134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11	1	박*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번길 **	(성남동)
135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19	1	노*현, 노*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호 (자곡동, 강남 더샵라그고)
136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22	1	임*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길 **	***호 (문정동)
137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26	1	임*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길 **	나동 *층 ***호 (신사동, 브라운스톤빌)
138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28	1	백*평	바퀴가 있는 동절장치물 이용하여 차도하위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나길 **	지층 (동천동)
139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31	1	이*현	바퀴가 있는 동절장치물 이용하여 차도하위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 *길 ***	*층 ***호 (한남동, 한미빌라)
140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33	1	김*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나길 **	(도화동)
141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41	1	김*순, 이*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번길 **	***호 (안양동)
142	10-288706	[시일반]서 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47	1	이*영	바퀴가 있는 동절장치물 이용하여 차도하위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들푸름*길 **	(두정동, 실크로드)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지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1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49	1	정*영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월트별시 은평로 11길 1-11	지족동 *호 (대조동)
1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50	1	하*석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길로 111길 11	(중곡동)
1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53	1	박*상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1길 1	(자양동)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55	1	하*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수지구 노닐로 11길 11-11	(단대동, 명빌라)
1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60	1	최*환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마로 11길 11-11	***동 ****호 (면목동, 신성미소지음아파트)
1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61	1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관악구 연서시 은평구 관악로 11길 11-11	***동 ****호 (신가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1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63	1	고*석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월트별시 은평로 11길 11	(응암동)
1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67	1	김*민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진로 11길 11	(번동)
1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69	1	조*주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1길 11-11	*층 (신당동)
1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강남구청보전및이영관권위반과태료	2018-05	001874	1	전*현	바뀌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은평로 11길 11-11	(용답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에 주소
1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75	1	임*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길 ***	***호 (가리봉동, 해오름빌)
1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76	1	고*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가평군 설 악면 용문전길 ***-***	(설악면)
1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78	1	김*남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길 **-***	(금호동*가)
1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80	1	조*주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답십리로**길 **	***호 (답십리동)
1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83	1	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가길 **	***호 (은 평동, 공릉삼익*단 시아파트)
1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86	1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	***호 (대 조동, 삼성타운아 파트)
1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87	1	전*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길 **	***호 (양재동, 스 위트빌)
1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92	1	KIM * JUNG	바위가 있는 동력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도영로 **	***호 (도 림동, 쌍용래티 비스티*단지)
1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895	1	하*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호 (하 계동, 하계*차창구 아파트)
1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01	1	이*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자양동)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06	1	박*웅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폐산로 **	***호 ***호 (하월곡동, 월곡* 에스에이지빌)
1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09	1	이*웅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 차 산 로 * * 길 ***	(화양동)
1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17	1	마*남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신로**길 **	(시흥동)
1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23	1	박*준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길 **	***호 (서초동, 화 이트로즈빌)
1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27	1	김*환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	(한남동)
1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28	1	박*진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 원구 은행로**번 길 ***-*	***호 (은행동)
1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30	1	최*민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	***호 (봉천동)
1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8-05	001931	1	강*순	바뀌가 있는 동점장 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길 **	(노량진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선유동1로 8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8번지 일원(시설물 추가에 따른 면적 증가)
 - 면 적 : <당초> 18,218㎡ <변경> 22,3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적장 및 공원, 체육시설, 자원순환센터
 - 내 역 :

당 초	변 경
- 환적장 1식 - 공원·체육시설 1식	- 환적장 1식 - 공원·체육시설 1식 - 자원순환센터 1식

5. 점용기간 : 2016.03.17.~2021.03.1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